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8다285151 판결 [건물명도 등]

재판경과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8다285151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나45596 판결

전문

원고,상고인 겸 피상고인

A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B

판 결 선 고 2020. 6. 11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나45596 판결

주문

원고의 상고를 각하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에 관하여

가. 항소심에 이르러 새로운 청구가 추가된 경우 항소심은 추가된 청구에 대하여는 실질상 제1심으로서 재판하여야 하므로, 제1심이 기존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데 대하여 쌍방이 항소하였고 항소심이 기존의 청구에 대하여는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는 배척할 경우, 단순히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라는 주문표시만 해서는 안 되고, 이와 함께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주문 표시를 하여야 한다.

재판의 누락이 있으면 그 부분 소송은 아직 원심에 계속 중이어서 상고의 대상이 되지 않아 그 부분에 대한 상고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17. 10.26. 선고 2017다245033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다28256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와의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부동산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다가, 제3회 변론기일에서 부동산 인도 청구를 취하하고 피고의 부동산 인도시까지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1,300만 원(2017. 4. 15.부터 2017. 6. 15.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고와 피고가 각 항소한 후, 원고는 제3회 변론기일에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1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15.부터 2018. 2.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차임 상당 손해배상금과 공과금 21,185,000원은 2018. 9. 21.부터(원심은 이를 '21,1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1.부터'로 선행하였다) 2018. 2.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이 기재된 2018. 3.31.자 항소취지 변경신청서 및 '피고의 잘못된 2017. 6. 15.자 물품공탁 때문에 원고가 상가 건물을 영유할 수 없어서

발생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금과 공과금을 지급해야한다'라는 취지의 2018. 4. 17.자 항소이유서를 각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13,000,000원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및 21,185,000원의 차임 상당 손해배상금과 공과금 청구는 기존 청구(13,000,000원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와 논리적으로 관련성이 없어 단순병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 원심은 추가된 원고의 각 청구에 대하여 실질상 제1심으로서 재판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결 주문과 이유에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고 주문에서 원고의 항소만 기각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추가된 청구에 대한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부분 청구는 여전히 원심에 계속 중이어서 적법한 상고의 대상이 되지 않아 이에 대한원고의 상고는 부적법하다.

2. 피고의 상고에 관하여

피고는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각하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정희주심 대법관 박상옥대법관 안철상대법관 김상환